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63
----------	-----

2016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남창진 의원(찬성자 10명)

나. 발의일자 : 2016년 1월 28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2일

다. 상정결과 :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3월 4일,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남창진 의원)

###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다.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동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하 “정비기준”이라 함)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나가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현재 제6판까지 업데이트되어 있음.
- 동 개정안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조문은 다음과 같음.

① “~의 규정에 의한” - 안 제3조 및 제14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립) 예술단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 ----- 민법 규정에 따른 -----.
제14조(경영평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영평가) ③ ----- 규정에 따른 -----.

<정비기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530	규정에 의한	規定	에 따른, 에 따라 (제○조에 따른, 제○조에 따라)

- 개정안은 제3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자 하나,

각각 “민법에 따른”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는 것이 정비기준에 부합함.

② “하고자 하는 경우(때)” - 안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관) ② 예술단체는 정관을 <u>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② ----- <u>변경하고자 할 경우</u> ----- -----.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전단 생략) 이를 <u>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u> 또한 같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u>변경하고자 할 때</u> -----.

<정비기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3699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하려는 경우에는, ~ 할 때에는, ~할 경우에는

- 개정안은 제6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로 하고, 제12조제1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고자 할 때”로 하고자 하나, 두 가지 모두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변경할 때” 등으로 하는 것이 정비기준에 부합함.

③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안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u> 예술단체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 <u>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u> ----- ----- -----.
제14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u>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경영평가) ① ----- <u>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u> -----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예술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u>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 ----- <u>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 -----.

<정비기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3690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개정안은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자 하나,

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하는 것이 정비기준에 부합하며, 하나의 자치법규 안에서는 표현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④ “~에 의한다” - 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연도) 예술단체의 사업연도는 시 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u>의한다</u> .	제11조(사업연도) ----- ----- <u>따른다</u> .

<정비기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2456	의하여, 의한다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에 따른, 따른다 (제○조에 따라, 제○조에 따른)

○ 안 제1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는 것은 정비기준에 부합함.

⑤ “당해” - 안 제12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② 예술단체 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를 받아 <u>당해</u>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② ----- ----- ----- ----- <u>해당</u> ----- -----.

<정비기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763	당해	當該	해당, 그 [‘그’는 ‘그’가 지시하는 바가 문장에서 명확히 드러날 때에 사용]

○ 안 제12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것은 정비기준에 부합함.

⑥ “~으로 하여금” - 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술단체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u>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u>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 ----- ----- <u>소속공무원이</u> ----- -----.

<정비기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3714	하여금(예 : ~로 하여금)	~에게, ~을, ~이, ~로 하여금

○ 안 제13조 중 “~으로 하여금”을 “~이”로 하는 것은 정비기준에 부합함.

⑦ “~에 관하여 필요한” - 안 제14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영평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영평가) ③ ----- ----- <u>관</u> <u>한 사항</u> -----.

○ 개정안은 제14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현행과 개정안 모두 정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비기준>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441	관하여, 대하여	에, 에게, 은, 는, 하기 위하여 [가급적 다른 말로 고치고, ‘관하여, 대하여’ 를 남용하지 않는다]
3691	필요한	에 필요한, 에 관하여 필요한
<p>○ ‘운영’과 같이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서술성 명사) 다음에 ‘관하여’가 오면 ‘관하여’를 삭제해도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지므로 이 경우 ‘관하여’를 삭제한다.</p> <p>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p> <p>○ ‘기준’과 같이 서술성 명사가 아닌 단어와 ‘필요한 사항’을 바로 연결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관하여’를 살려 쓰거나 ‘필요한’을 생략하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p> <p>예)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또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p>		

#### □ 종합검토의견

-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나,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정비기준에 부합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
- 또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이나 합리적인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 없이 조문만 정비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집행부 일괄정비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63
----------	--------

제안연월일 : 2016년 3월 9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함.

## 2. 주요골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함  
(안 제3조, 제6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

## 3. 참고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정비용어 사전

#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민법 규정에 따른”을 “민법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안 제12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를 각각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며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안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안 제15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설립) 예술단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 ----- 민법 규정에 따른 ----- -----.	제3조(설립) ----- 민법 에 따른 ----- ---
제6조(정관) ② 예술단체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② ----- --- 변경하고자 할 경우--- ----- ----- -----.	제6조(정관) ② ----- --- 변경하려는 경우----- ----- ----- --.
제11조(사업연도) 예술단체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연도) ----- ----- ----- 따른다.	제11조(사업연도)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전단 생략)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예술단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변경하고자 할 때-----. ② ----- ----- ----- 해당 --- -----.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개정안과 같음) --- 변경하려는 경우-----. ②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술단체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보고 및 검사)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 소속공무원  이 -----  -----.</p>	<p>제13조(보고 및 검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소속공  무원이 -----  -----.</p>
<p>제14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경영평가) ①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  --- 관한 -----  -----.</p>	<p>제14조(경영평가) ①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  -----  관한 -----  --.</p>
<p>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예술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15조(공무원의 파견) -----  -----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p>	<p>제15조(공무원의 파견)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에 따른”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며

제1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12조제1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13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이”로 각각 하며

제14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  
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각각 하며

제15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립) 예술단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 ----- 민법에 따른 ----- -----.
제6조(정관) ② 예술단체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② ----- 변경하려는 경우----- -----.
제11조(사업연도) 예술단체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연도) ----- -----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전단 생략)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예술단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변경하려는 경우-----. ② ----- ----- 해당 ----- -----.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술단체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속공무원이 ----- -----.
제14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영평가) ①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 ----- 관한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예술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